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>
▣ 김태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5943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신은호

목 차

Ⅰ. 개요 ····· 1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 ····· 2

1.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(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) ····· 2

Ⅰ. 개요

1.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5943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김태호의원 등 15인

(2) 제 안 일 : 2026. 1. 9.

(3) 회 부 일 : 2026. 1. 12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, 공항, 철도 객차, 선박,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(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)

가. 개정안의 내용

□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[1]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[2]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[3]에 따른 전통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).

---

1) **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**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노인의료복지시설
3. 노인여가복지시설
4.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노인보호전문기관
6.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
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2) **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**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2의2.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: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, 지역사회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개선 사업, 장애인의 권익 옹호·증진,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② (생략)

3) **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전통시장"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	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----------.
1. ~ 6의3. (생 략)	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<신 설>	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<신 설>	9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7. (생 략)	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 “응급의료법”)」 제47조의2제1항[4]은 공공보건의료기관, 구급차, 여객 항공기·공항, 철도차량 객차, 선박,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(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, AED)[5]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(이하 “AED”[6])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.

□ 이에 따라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의 상세내역은 [표 1]과 같으며,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.

[표 1] AED 의무구비시설의 유형 및 기준

유형	기준
공공보건의료기관	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구급차	「119구조・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여객 항공기 및 공항	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
4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・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2. 「119구조・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3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6의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
6의3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5)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(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)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(구 자동제세동기)

6)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, 본 검토보고에서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.

유형	기준
철도차량 객차	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선박	「선박법」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공동주택	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
사업장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
관광지·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	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
다중이용시설	- **철도역사 대합실**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,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) - **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**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) - **항만 대합실**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) - **카지노 시설**(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 - **경마장** - **경주장** - **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 외국인보호소, 소년원** - **운동장 및 종합운동장**(관람석 5천석 이상) - **중앙행정기관 청사**(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) - **시·도 청사**(17개 시·도 청사)

자료: 「응급의료법」 제47조의2제1항, 「응급의료법 시행령」 제26조의7 및 「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(AED) 설치 및 관리 지침(제7판)」(보건복지부 지침)을 바탕으로 작성

□ 개정안은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을 AED 의무구비시설에 새롭게 포함하여 해당 시설에서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, 이들 시설이 취약계층인 노인·장애인 및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□ 다만,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의 AED 의무구비를 법률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첫째,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고연령층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([표 2])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.

[표 2] 연령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(2024년)

(단위: 건, %)

연령	0～9세	10～19세	20～29세	30～39세	40～49세	50～59세	60～69세	70～79세	80세 이상
건수 (100.0)	299 (0.9)	377 (1.1)	814 (2.5)	1,149 (3.5)	2,225 (6.7)	4,296 (13.0)	6,377 (19.3)	6,988 (21.2)	10,493 (31.8)

주: 연령미상(16건) 제외 통계임.

자료: 질병관리청·소방청,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, 2025. 12.

다만,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유형 및 규모의 다양성, AED의 실질적인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AED 의무구비시설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[7].

또한 전통시장[8]의 경우 옥외 면적이 넓어 설치장소 선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, 상인의 자율조직이므로 설치·관리 주체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설치장소와 설치·관리 주체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
---

7)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은 유형 및 규모가 다양하고 시설의 수가 많으며(노인복지시설 96,430개소, 장애인복지시설 3,984개소), 경로당과 같이 통상 상주직원 없이 자체 운영하거나 노인 방문요양서비스기관이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같이 재가서비스 또는 이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도 있음.

<노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소 수>
-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·노인공동생활가정 등) 281개소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6,195개소, 노인여가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등) 70,935개소,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서비스·방문목욕서비스 등) 18,745개소, 노인보호전문기관 39개소,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5개소,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개소
(자료: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, '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' 통계, 2024년 기준)

<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소 수>
- 거주시설 1,524개소, 지역사회재활시설 1,609개소, 직업재활시설 815개소, 의료재활시설 19개소, 생산품판매시설 17개소
(자료: 국가데이터처 e-나라지표, '노인복지시설 현황' 통계, 2024년 기준)

8) 1,403개소 (자료: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, '전통시장·상점가 실태조사' 통계, 2024년 기준)

- 둘째, 현행 「응급의료법」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의3에 규정된 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AED 의무구비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,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활용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한편, AED 의무구비시설을 확대하는 취지의 「응급의료법」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, 동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.

[표 3]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 취지의 「응급의료법」 개정안 발의 현황 (동 개정안 포함)

의안번호 (대표발의)	발의일	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
2203226 (박주민의원)	'24.8.27.	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***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**전통시장**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**문화시설***
2204056 (인요한의원)	'24.9.19.	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***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**장애인복지시설***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**사회복지시설***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대규모점포**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**전통시장**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어린이집*** 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**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**
2206389 (임호선의원)	'24.12.11.	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**박물관 및 미술관*** ※ 박물관 및 미술관*에는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구비
2208726 (이광희의원)	'25.3.7.	- **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지역축제***
2210091 (김민석의원)	'25.4.24.	- **철도역사 대합실**(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포함)
2211159 (김재원의원)	'25.6.30.	-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이 운용하는 **경찰차**

의안번호 (대표발의)	발의일	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
2214619 (문진석의원)	'25.11.27.	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**노선(路線)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** 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***
2215943 (김태호의원) ※동 개정안	'26.1.9.	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***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**장애인복지시설***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**전통시장**
2216323 (임종득의원)	'26.1.26.	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***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**장애인복지시설***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대규모점포**

주: 해당 의무구비시설의 규모 등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안에서 규정하는 경우 "*" 표기

자료: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

다. 관계 기관 의견

□ (보건복지부)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,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는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도, 접근성, 관리 가능성 및 설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복지시설은 서비스대상 상주여부 및 관리책임자 지정 곤란 등 점검·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고려 필요

- 전통시장은 옥외면적이 넓고 다수 점포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장소, 설치·관리주체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

□ (서울특별시)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을 구비의무대상시설로 지정할 경우 월 1회 통보 의무가 발생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까지 연계됨[9].

9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의5.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

- 이는 관리역량이 제한된 시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행정부담과 현장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에 반대함.

□ (울산광역시) 전통시장은 대상 장소가 광범위하여 구체적 설치장소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, 관리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.

□ (대한심폐소생협회·대한응급구조사협회) 의견 없음.

문 의 처
02)6788-5509